

## 단기초청 (C-3-1)

### 신청요건:

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, 행사,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,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,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 체류하고자 하는 자

단기초청(C-3-1) 및 단기상용(C-3-4)은 사증발급신청서상 본인이 기재한 입국목적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, 그에 따라 사증구분 처리함.

상기 단기 초청 대상자여도 통상의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, 단기취업(C-4-5) 사증 발급대상임.

초청이란 invitation letter의 의미(방문허가의 의미가 아님)

사증종류(유효기간/체류기간): 단수(S): 3개월/90일:

### 신청인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x4.5 cm 컬러사진)
  2. 여권 원본 및 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  3. 혼인관계증명서(최근 45일 이내 발급)
    - 미성년자(19세 미만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증명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)
  4. 경제력 입증자료
    - 사업자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직장인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
    - 기타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(공동명의 불가)
- \*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을 제출함**  
**\*만 19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은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한 경우,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 면제**
5. 청관련서류(※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초청관련 서류 일체 원본제출, 공증 불필요)
    - 한국측 초청기관
      - 초청장(명단, 초청목적·사유, 경비 부담사항, 초청기간 기재 필수)
    - \* 초청 기관에서 쓰는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초청장 양식 다운 가능
  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  - 협조요청공문(초청장에 협조요청 내용 포함 가능)
      - 행사(교육, 연수, 세미나, 업무 협의 등) 일정, 행사 소개 및 개요, 입국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
    - 몽골측 피초청인 및 기관
      - 협조요청공문(단체초청의 경우)
      - 사유서(개인의 경우)
- <대한체육회 초청>**  
 대한체육회나 산하단체의 초청장 또는 관련 부처 장관명의 협조요청 공문을 제출할 경우,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면제  
 ※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리스트 참조 필요([www.sports.or.kr](http://www.sports.or.kr))
6. 위임장(부모 미동반 사증신청 또는 입국하는 미성년자는 제출 필수)